

사단법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정관

제1조 상호

- 1.1 단체의 영문명칭은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이며 (이하 “ECCK”)
- 1.2 한국명은 “사단법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다.
- 1.3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 1.4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사회가 정한 관리 지침과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제2조 목적

- 2.1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과 한국간의 경제 및 사회 관계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정관상의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은 2012년 12월 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설립 당시의 회원국을 포함한다.
- 2.2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또 모든 과세 대상 활동에 대하여 규정된 기간 안에 대한민국 세무 당국에 충실히 보고해야 한다.
- 2.3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며, 산업 및 상업 발전에 대하여 회람, 연례보고서, 소식지, 기자회견, 세미나 및 기타 미디어 혹은 이벤트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4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과 대한민국의 정부당국 및 기관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소재 기업 또는 기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성격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금과 자산

3.1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발생한 수익금은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정관으로 정해진 임무와 책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선에서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기금과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분별 있고 경제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3.2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과 비회원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3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주요 자원 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3.3.1 연회비

3.3.2 등록비 (신입회원)

3.3.3 위원회비

3.3.4 이벤트

3.3.5 광고

3.3.6 용역 제공

3.3.7 기타

3.4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연도별 예산 단위로 운영된다. 연도별 예산 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일반회계원칙(K-GAAP)에 따른다.

제4조 책임

4.1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당 상의의 자산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4.2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당 상의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 상의의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당 상의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회원 및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3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3자로부터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지

급 받은 기금은 별도의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현금 원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5조 회원

5.1 회원가입신청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전달되며, 이사회는 적절한 기간 내로 가입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기밀이며 변경할 수 없다.

5.2 유럽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회원의 과반 이상이 유럽연합 혹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회원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5.3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이사회에서 2/3이상의 결의안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5.4 회원 종류

5.4.1 **기업회원**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법인의 대표로서, 기업회원은 지정된 대표를 통해 안건을 발의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및 기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회원의 투표권은 서면승인을 통하여 다른 기업회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 서면 승인은 늦어도 총회 시작 전에 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기업회원은 최대 5개의 투표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국적의 기업회원 대표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에 본사를 둔 기업의 여타 국적의 기업회원 대표자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위원회에 가입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5.4.2 **해외 회원**은 대한민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및 법인에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해외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외 회원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기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관(예: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4.3 **개인회원**의 자격은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의 시민권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여된다. 개인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회원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기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관(예: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4.4 **비영리법인 회원**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비영리법인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 회원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기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관(예: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4.5 **명예회장 및 명예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중대한 기여를 한 개인, 기업,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명예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모든 공공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이사회는 제외),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 명예 회원은 투표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거나, 기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관(예: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명예 회원은 회비가 면제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6.1 회원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설립목적을 지지하며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정관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관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회원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의 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총회

7.1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연례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7.2 연례총회는 매년 연초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7.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된다.

7.3.1 이사회에서 개최를 결정한 경우.

7.3.2 기업회원 중 25% 이상이 임시총회안건과 그에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 경우. 임시총회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지만 서면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늦어도 4주 이내에 개최한다.

7.4 회원 총회는

7.4.1 외부 회계 감사를 지정한다.

7.4.2 이사회, 감사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의해 쓰여진 보고서를 채택한다.

7.4.3 이사회 임원들을 선출한다.

7.4.4 이사회를 면책할 수 있다.

7.4.5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연간 예산을 승인한다.

7.4.6 정관의 개정을 결의할 수 있다.

7.4.7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7.4.8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들을 결의에 부칠 수 있다.

7.5 이사회는 연례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배포물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된다. 공지문은 반드시 안건을 포함해야 하며, 총회 예정일 최소 2주 전에는 발송되어야 한다.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고 종료하며,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총회는 오직 공지된 안건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6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기업회원의 10%가 참석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경우에 충족된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3주 이내에 다시 총회가 소집된다. 이 경우 총회는 기업회원 및 대리인을 통한 참석 정족수 요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당 총회에서 더 이상 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총회 공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7.7 총회에서는 참석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기업회원들의 일반다수결에 의해 결의안을 채택한다. (i)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정관 개정, 또는 (ii)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최소의결정족수는 기업회원들의 25%가 참석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해야 하며, 참석인원의 2/3의 찬성에 의해 결의안이 채택된다.

7.8 무기명투표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다수결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총회에서, 회장 혹은 의장직을 맡은 부회장, 그리고 최소한 1인 이상의 이사회 이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7.9 회장 또는 회원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7.9.1 회장 혹은 회원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
- 7.9.2 회장 혹은 회원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이해관계와 배치될 경우

제8조 협회 기관

8.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 8.1.1 연례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이사, 수탁인 및 감사를 선출한다.
- 8.1.2 추천은 선거가 있는 정기 총회 최소 7일 전, 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8.1.3 회장, 부회장, 이사, 수탁인 그리고 감사의 선거는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 8.1.4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 8.1.5 회장, 부회장, 이사, 수탁인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재선될 수 있다.

8.2 이사회

8.2.1 이사회는 회장과 3인의 부회장, 3인의 이사, 수탁인, 감사 및 의결권이 없는 총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회장과 최소 2인 이상의 부회장 그리고 이사, 수탁인, 감사 가운데 최소 3인 이상은 유럽연합 혹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국적자여야 하며, 총장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2.2 다음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이사로 선출될 수 없다.

- 8.2.2.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8.2.2.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8.2.2.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2.2.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2.3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이사 중 5/9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회부하여 총회 결의에 따른다.

8.2.4 상근직원을 제외한, 이사회의 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8.2.5 이사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사업 및 활동사항을 관리하고,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재정상황을 검토한다.
- 8.2.6 이사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대신하여 총장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연간예산을 승인한다. 감사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정규업무시간 중 모든 회계정보에 대하여 완벽한 접근권한을 가진다.
- 8.2.7 이사회는 총회와 자문위원회에 이사회의 활동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다. 이사회는 회비에 대하여 검토하며 타당한 경우 다음 해의 회비를 변경할 수 있다.
- 8.2.8 이사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회계장부 및 계좌들에 대한 외부감사의 보고를 받으며, 이를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2.9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동하며, 만약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여름휴가와 같은 경우) 적어도 분기별로 최소 1회 회동한다.
- 8.2.10 회장은 이사회의 공식대표이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한다. 회장은 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
- 8.2.11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기간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8.2.12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8.2.12.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8.2.12.2 상기 항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8.2.12.3 상기 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8.2.12.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8.2.1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이사의 선출 이전에 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이사는 다음 총회 소집시까지 이사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8.2.14 이사의 권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차기 연례총회 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회원 가운데 한 회원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권위가 발생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 후임이사의 임기는 권위된 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8.2.15 주한유럽연합대표부의 상무부 대표는 참관인으로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 받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필요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다. 상무부 대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상무부 대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제반 활동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8.3 총장

8.3.1 이사회는 총장을 지명한다. 총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이사회와의 협력 하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모든 활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정 및 행사 등을 계획한다. 총장의 겸직을 금하며, 구체적 사항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8.3.2 2011년도 및 그 이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의 사무총장(또는 부사무총장)직을 수행한 자를 총장(또는 부총장)으로 지명하지 아니한다.

8.4 자문위원회

8.4.1 자문위원회는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기업 공동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사회 이사는 자문 위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 자국 상공회의소를 설립한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의 상공회의소는 회원국을 대표할 기업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만일 회원국의 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주재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의 대사는 회원국의 기업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4.2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초청을 통해 분기별로 회동한다.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활동과 향후 행사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자문위원회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활동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8.4.3 이사회와 총장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회원국 상공회의소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자문위원회는 조력한다.

제9조 회계

9.1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수익금은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9.2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회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따른다.

제10조 보칙

10.1 외부감사

10.1.1 지명도 높은 한국 회계법인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장부와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10.1.2 외부감사는 연례총회에서 지정되며, 회계감사의 결과는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10.2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해산하는 경우, 총회는 해산결의와 함께 청산인을 지정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을 위임한다.

제11조 발효 및 시행

본 정관은 2019년 3월부터 유효하며 2016년 11월에 발효된 정관을 대체한다.